



## 서울서부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24고단2352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힘찬(공판)  
판 결 선 고 2025. 10. 31.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0.경부터 2021. 11.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쇼핑몰 게시판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편집저작물인 'E(등록번호 :



제 F호)' 상세 페이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저작권등록증

1. -편집저작물 사진

1. -피의자 홈페이지 화면 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지원